법규준수도 통합개편

「법규준수도 평가제도」통합 및 이행계획

2025. 5.

관 세 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

법규준수도 통합개편

「법규준수도 평가제도」통합 및 이행계획

본문

I. 추진 배경	1
Π. 추진방향 및 경과	2
皿. 공급망별 평가제도 통합 및 개선내용	3
IV. 이행 계획	13
참고자료	
1. UNI-PASS를 통한 관세협력도 신청 가이드	21
2. 특송협력도 운영 설명자료	4
3. FAQ(변경되는 법규준수도 제도 관련 사항)	46
<참고> 법규준수도 제도 개요 / 문의처	51

법규준수도 통합개편 「법규준수도 평가제도」통합 및 이행계획

본 문

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

목 차

I. 추진 배경	1
II. 추진방향 및 경과	2
Ⅲ. 공급망별 평가제도 통합 및 개선내용	3
IV. 이행 계획	13

[붙임]

- 1. UNI-PASS를 통한 관세협력도 신청 가이드
- 2. 특송협력도 운영 설명자료
- 3. FAQ(변경되는 법규준수도 제도 관련 사항) <참고> 법규준수도 제도 개요 / 문의처

추진 배경

○ (현황) 관세청에는 업무 분야(공급망)별로 법규준수 관련 각각 상이한 평가체계와 기준을 운영 중

구	분	통합 법규준수도('10)	특송업체 법규준수도('09)	법규수행능력평가('05)
관리	부서	위험관리센터	전자상거래통관과	통관물류정책과
평가	·대상	10개 공급망*	특송업체	비AEO 물류업체(보세구역 등 6개)
목	.적	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 향상	특송업체 검사비율 차등관리	물류업체 관리
평가체계	정량	^① 신고정확도 - ^② 중요사항 위반 + ^③ 관세협력도	0 신고정확도 $ ^{2}$ 감점 $+$ 3 세관 협력도·가점 $+$ 의무사항이행도	^{①·②} 법규준수 + ^③ 관세협력도
	정성			+ 경영안전, 시설장비, 내부통제
측정	방식	정량화된 기준으로 분기별 측정	정량평가 중심으로 분기별 측정	현장확인 등 정성평가 중심으로 연간 측정
활	·용	AEO 공인, 담보면제 등	검사율 차등 적용 등	보세구역 특허, 갱신 등

^{* 10}개 공급망 : ①수출입업체, ②신고인, ③특송업체, ④보세구역운영인, ⑤보세운송업자, ⑥화물운송주선업자, ⑦선박회사, ⑧항공사, ⑨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, ⑩하역업자

- o (문제점) 성격이 유사한 3가지 제도를 함께 운영함에 따라
- (행정 비효율) 하나의 업체가 복수의 평가제도에 의해 중복평가
- (**민원 혼란/신뢰 저하**) 제도별 평가항목·산식이 달라 평가점수 상이*
 - * 예) 글로벌OO: (통합법규준수도) 96.28점 VS (특송업체 법규준수도) 47.00점, 차이 49.28점
 - ⇒ 법규준수 평가제도 통합으로 대외신뢰 확보 및 업체 자율법규준수 제고 필요

추진 방향 및 경과

기본 방향

- ◇ 우리청에서 운영중인 업체 평가제도들을 점검 하여 평가 방법, 규정, 시스템 등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통합
- ◇ 업무국에서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정책 목표들은 동 작업 이후에도 훼손되지 않도록 세부평가항목에 반영
- ◇ 현재 제한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평가항목들을 공급망(업체)의 자율적 점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

추진경과

o ('21.9월~11월) 평가제도 **통합 방안 논의** 시작 * T/F 운영(업무국 등 39명)

 \blacksquare

o ('22.2월~'23.6월) **특송분야 통합** 검토

 \blacksquare

o ('23.8월~12월) **물류분야 통합** 검토

 \blacksquare

o ('24.2월~5월) **수출입업체·신고인 분야** 검토

 \blacksquare

- o ('24.5월~11월) 법규준수도 시스템 고도화
 - * 오류검증, 시뮬레이션, 위험관리, 통합산식 전산화 등

 \blacksquare

o (~'25.3월) ^{종합검토}가점 신청절차, 대외공개 범위 등

공급망별 평가제도 통합 및 개선내용

□ 변화되는 모습 및 기대효과

구분	AS-IS	TO-BE
평가	• 1개 업체에 대해 여러 개의 평가점수 상존 - 각 제도의 장점이 분산	통합된 1개의 제도로 업체의 법규준수도 평가공급망별 평가기준 최적 단일화
일원화	예) ㅇㅇ글로벌(특송업체) ① 특송법규준수도 75점 ② 통합법규준수도 90점	<특송분야> 법규준수도 80점
활 용 활성화	 AEO업체 → 통합법규 준수도 점수 활용(인증·갱신) 비AEO업체 → 법규수행능력 평가등급 활용(특허갱신 등) 	• 법규준수도 운영방식 효율화 법규준수도관리부서 ⇒ 법규준수도활용부서 위험관리센터 각 업무국
의견	• 법규준수도에 대한 의견제출*은 AEO업체에 편중	• 비AEO 업체도 의견제출 기회 확대 (∵ 기존 법규수행능력평가에서는
수렴	* 법규준수도 시스템은 오류 상세 제공으로 의견제출 용이	의견제출 절차가 없음)
정보 제공	 평가기준 미공개* * 신고정확도 평가항목 일부만 공개 (정정항목-중요/경미) 	 평가기준* 공개 * 평가항목, 최소평가기준 평가항목 정의서 제공
협력 강화	• 관세협력도(가점) 미흡* * AEO에 편중, 표창 외 가점항목 부족	 가점 확대(교육, 간담회 등) 업체 신청에 의한 가점 반영 프로세스 구축

기대효과

- (대내) 행정낭비 제거, **평가제도 신뢰성 제고**
- (대외) 공급망별 1개의 평가점수만 존재 → **기업 혼란 감소**
 - (대내) 규정 슬림화, 혜택부여 기준 명확화
- (대외) 활용 근거 명확, 관세행정 환류↑
 → 기업 혼란 감소
- (대내) 평가오류사항, 건의 반영 등 제도개선
 - (대외) 평가 신뢰 제고 → **자율법규준수 견인**
 - (대내) 평가제도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관세행정에 적합한 평가항목 지속 개발
 - (대외) 알권리 제공 → **자율법규준수 견인**
 - (대내) 관세행정 민관협력도·법규준수 관심↑
 - (대외) 가점 자율신청 → **자율법규준수 견인**

1 평가제도 통합 설계 원칙

□ [평가체계] 현행 통합 법규준수도의 기본체계로 통합(최대 100점)

법규준수도 =	신고정확도 -	중요사항 위반	+	관세협력도
(1 저비	신고건 대비	세액부문		품목분류사전심사
· ·		범칙사항		표창
→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 土	수) × 100	행정제재 등		경진대회 등

- o 평가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전산 측정가능한 항목만으로 평가
- o 서류·현장확인을 통해 평가되었던 정성평가 항목*은 특허 갱신 등 필요 시 업무국에서 추후 활용 검토
 - * 예) 법규수행능력평가제도 시 경영안전, 시설장비, 내부통제 등 화물관리 적정여부
- □ [**최적화**] **각 평가제도의 장점**을 공급망별 특성에 맞춰 **최적 단일화**
- ㅇ 각 유사제도상 개별 공급망 평가에 유용한 항목을 최대한 수용

수출입업체 · 신고인	특송업체	물류업체
• 수출입신고 오류점수제와 통일성	• 특송 현장여건, 업무 환경 반영	• 평가 객관성 및 업무 효율성 확보
		$\overline{\mathbb{Q}}$
• 정정, 취하, 각하 등 평가 통일화	• 현 '특송 지침' 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재설계	• 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항목(정량) ① 법규수행능력평가 정량평가

- o 공급망별 최근 제도 신설 및 변경사항을 반영
 - * 예) [특송업체] 전자상거래 통관 고시 개정('23.7) → 직접구매, 구매대행 등 기재 성실도 [보세구역] 복합물류보세창고 제도 신설('23.7)→ B/L분할합병포괄신고 정정률
- o 평가 실익과 점수 왜곡방지를 위해 **최소 평가기준 마련**(수출입, 특송)
 - * 수출입업체(법인 기준) 중 약 51.8%가 2년간 수출입신고 건이 10건이 되지 않음
- □ [자율적 법규준수 유도] 다양한 인센티브 항목 개발 및 공개 확대
 - ㅇ 자율정정 유도를 위하여 **정정시기에 따른 감점 면제 차등화***
 - * (수출입신고) 수입신고수리전, 수출신고수리 후 7일 이내, 자율정정기간 내 → 감점면제
 - o AEO 편중된 관세협력도를 확대 개편하고 평가항목을 대외 공개
 - o 새로운 제도 개선방향에 맞춰 조기 정착*되도록 업무국 정책 지원
 - * (특송업체) 전자상거래 유형 정보 성실 기재 여부,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건 확인 → 신설
- □ [법규준수도 운영] 법규준수도 제도 통합에 따른 부서별 역할 및 관리
 - o 센터에서 법규준수도 총괄관리 및 대외창구 역할(점수 의견제출 등)을 수행
 - * 법규준수도 평가 대상 업무 시스템·제도 변경 시 업무국에서 센터로 개선 요청
 - o 업무국은 업체별 법규준수도를 관련 제도 운영에 활용(등급관리를 통한 혜택 부여 등)

2 공급망별 제도 통합

수출입업체·신고인 분야

[^{수출입오류점수제도}유사제도와 평가기준 일치화]

- o 법규준수도의 **수출입 정정 중요도*** 기준을 **오류점수의 기준**으로 **일치**
 - * 정정 항목의 중요도에 따라 감점 가중치 적용 : 예) 중요 항목 2점, 경미 항목 1점

통합 전	통합 후(=오류점수 기준)
(수입) 중요 항목 12개, 경미 항목 22개	(수입) 중요 항목 29개, 경미 항목 32개
(수출) 중요 항목 8개, 경미 항목 28개	(수출) 중요 항목 19개, 경미 항목 30개
* 예) 수입 중요항목: 세종 등 12개(BL번호 X)	* 예) 수입 중요항목: BL번호 등 29개(세종 X)



(일치화) 오류점수의 중요·경미 정정 항목 정의와 일치화

○ 법규준수도의 정정 등 면제 기준을 오류점수의 기준으로 **일치**

통합 전	통합 후(=오류점수 기준)	
정정 등 시기에 따른 면제기준 없음	(정정) ~수리전/수출 7일 이내 /자율정정 기간 내 정정시 면제 (취하) 수리전	
정정의 사유에 따른 면제(수입 15개, 수출 10개)	정정의 사유에 따른 면제(수입 14개, 수출 5개)	



(일치화) 오류점수의 면제기준(시기, 사유)과 일치화

※ 단, 오류점수와 달리 **법규준수도는 귀책에 관계없이 모두 감점(현행 유지)**

[평가기준 개선]

- (**신규**) 원산지 허위표시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행정제재에 추가
- o (**삭제**) '보완요구', '(수출화물) 선적연장'은 감점 평가항목에서 삭제

특송 분야

[^{특송업체 법규준수도}유사제도의 평가항목 수용]

- o 특송 현장 법규준수관리의 유용한 항목을 법규준수도에 반영
- o 업무국 및 세관의 관리감독·서류확인 필요항목은 '특송협력도'로 평가

구 분	수용 항목(특송업체 평가 지침→법규준수도)	비고
성실신고 준수	①품명 등 신고 적정성 ②배송지정보 제출 적정성	성실신고 기반, 불법 물품 반입차단 제고
우범도 평가	①세관선별 불법물품 적발점수 ②업체선별 불법물품 적발점수 ③업체선별 적발률	선별 주체별 적발 기여도 반영
특송협력도	①불법물품 밀반입 교육 ②통관목록 선별자 관리 ③불법행위 정보제공 ④세관장협조사항 불이행 ⑤기타협력도	특송업체 법규준수· 관세행정 참여 유도

[신규항목 추가]

- o 통관목록에 전자상거래 공급망 정보* 성실 기재 여부 평가
 - → 해외직구를 통한 불법물품 반입 위험 대응
 - *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고시 개정('23.7)에 따라 전자상거래 유형(직접구매, 구매대행 등) 기재
- o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확인 건수 평가 → 고유부호 도용 문제 대응

물류분야

[^{법규수행능력}유사제도의 평가항목 수용]

o 공급망별 신고정확도·위험관리에 유용한 항목을 법규준수도에 반영

공급망 구분	수용 항목(법규수행→법규준수도)	비고
선사, 항공사	출항 적재화물목록 제출시기 미준수율	출항관련 신고정확도 관리
 보세운송	배차예정정보 제출률, 검사대상 도착보고율	운송관련 위험관리 강화
보세구역·FTZ	보세사 징계(감점), 보세사 보유수(가점)	부정행위 가담방지

[신규항목 추가]

- o 최근 도입된 **복합물류 보세창고* 평가** → 신규업무 법규준수관리 강화
 - * B/L단위 화물의 분할·합병·재포장 등 물류작업 수행('23.7. 신규특허)

[정성평가 항목 삭제]

- o 서류/현장확인 → **전산 신고정확도 평가항목 비중 확대** : 21~22개 → 24개
- 자율측정항목*은 평가항목에서 배제
 - * 예: 시설장비, 안전관리, 내부통제 등

3 자율법규준수 제고

□ 관세협력도 확대 개편

- o (가점 확대) 업체의 관세행정 참여 유도를 위해 가점 신설* 및 배점 확대**
 - * (공통) 간담회·설명회, 교육, (수출입업체) 원산지 사전심사, (보세구역·FTZ) 보세사 수
- ** (수출입업체) 5점 → 7점, (특송업체) 7점 → 14점, (물류업체) 7점 → 9점
- (**AEO 편중 탈피**) ^{기존}AEO경진대회 가점 → ^{개편}관세청 경진대회로 확대
- o (업체 신청 프로세스 도입) 업체가 Uni-pass로 직접 신청 → 센터 승인

□ 평가기준 대외 공개

- o (공개 범위) 통합산식의 기본적인 평가항목 등을 별표에 수록 예정
 - * ^{별표1}공급망별 평가대상 <u>최소기준</u>, ^{별표2}신고정확도·중요사항위반·관세협력도 <u>평가항목 및 정의서</u>

평가기준	대외	공개	범위	변화
------	----	----	----	----

고게 버이	통합 전						
공개 범위	통합 법규준수도	특송업체 법규준수도	법규수행능력평가				
① 최소기준	X	Δ	Х				
② 평가항목	△(정정항목만 공개)	Δ	Х				
③ 평가산식	X	Δ	X				
④ 가중치	X	해당없음	해당없음				
⑤ 배점	△(배점한도 개괄적* 공개) * 예) 중요사항위반 50점	Δ	X				

통합 후 법규준수도
0
0
X (평가정의서는 제공) X
Δ

통합 초기 단계, 필요 최소 수준 공개 → 업무량·업체 자정노력 등 고려 점진적 확대

제도 정비

정비대상

◇ 법규준수 관련 3개의 평가제도를 (공급망별) 통합

^{전체}통합 법규준수도(분기별 평가) ⊕ ^{특송}법규준수도(분기별 평가) → **'25. 4분기 통합**(예정) ^{물류}법규수행능력평가(연 1회 평가) → '**27년 통합**(제도 혼선을 고려)

→ (정비대상) 법령 2개, 고시 15개, 훈령 2, 지침 1, 내규 5

□ 법규준수 관련 제도 정비

- **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**(위험관리센터)
- (내용) 평가항목 공개, 점수산정 기준 및 평가절차 변경 등
- (계획) 개정안 마련(6월) → 시행(12월) / 5~6개월 소요 예상

구분	구분 현행 개정		비고			
^① 평가항목		일부 항목만 공개 (정정 항목)	모든 평가항목 및 대상 공개 (평가항목 정의서, 산정방식)	개선		
^② 점수산정	만점	99점	100점	통합		
6T26	체계	신고정확도 - 중요사	신고정확도 - 중요사항위반 + 관세협력도			
^③ 관세협력도		세관 수기입력 (표창 등록)	업체 신청 (표창 ① 간담회, 교육, 경진대회)	개선		
			유니패스 제출, 제출기한	통합		
			특송협력도 규정	통합		
^④ 평가일자		분기 다음달 20일까지	분기 다음달 25일까지	개선		
^⑤ 평가대상 최소기준		미공개	공급망별 공개			
^⑥ 신고정확도		중요, 경미항목	중요, 경미항목 변경	통합		

○ **특송업체 법규준수도 평가** · **관리 업무 처리지침**(전자상거래통관과)

- (내용) 평가방식 삭제, 특송협력도 평가 등록·관리, 법규준수도 활용
- (계획) 법규준수도 고시 시행 이전에 해당 지침 개정 예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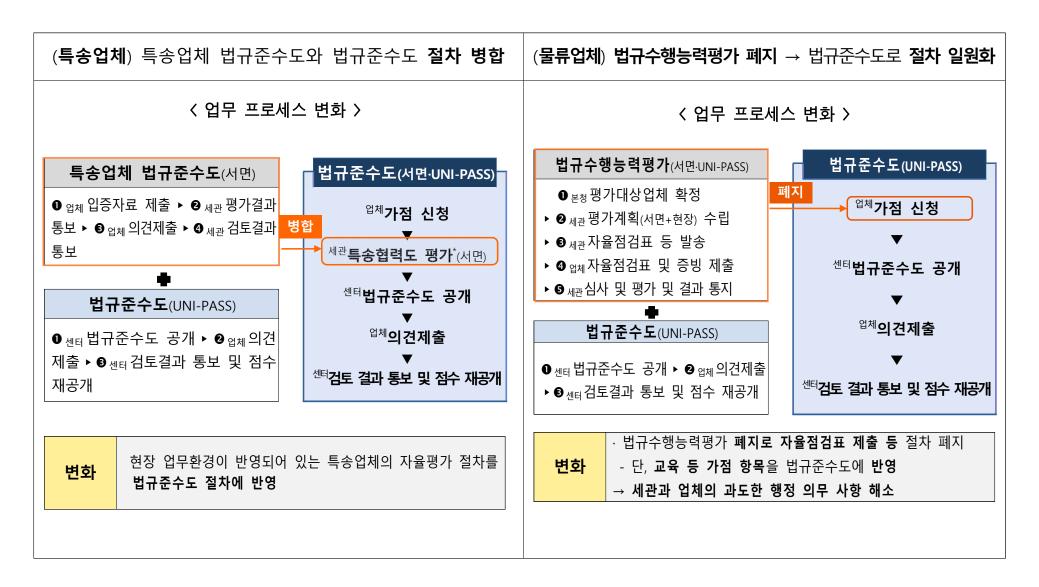
구분	현행	개정	비고
^① 평가방식·절차	별도 규정	특송협력도 평가절차에 한하여 별도 규정	법규준수도
^② 평가체계	신고정확도 + 세관협력도 + 의무사항이행도 + 가점 - 감점	특송협력도	고시로 통합 (특송협력도 평가는 예외 – 지침으로 운영)

○ **물류업체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 훈령**(통관물류정책과)

- (내용) 법규수행능력평가 측정·결과통지 등 삭제, 법규준수도 활용
- (계획) '26년 법규수행능력평가까지 시행, 이후 훈령 개정 예정

구분	현행	개정	비고
^① 점검반 편성·운영	평가관련 사항의 점검·확인·평가관리	삭제	
^② 법규수행능력 측정	별도 평가기준 관리	삭제	법규준수도 고시로
^③ 점수산출	100점 만점	삭제	통합
[®] 평가결과 통지	업체 요청시 전자방식 통보	삭제	

□ 달라지는 업무프로세스



이행계획

1 통합 평가 이행관리

(5월) 이행계획 수립 → (7월~11월) 시험운영 → (12월) 본격운영

□ [워킹그룹 구성] 제도 및 시스템 변경사항 등 대내외 안내 및 대응



- o ^①이행관리그룹(센터), ^②통합그룹(업무국), ^③대내지원그룹(세관, 고객부서), ^④대외지원그룹(유관기관, 업체)
- □ [제도 홍보] 법규준수도 통합 관련 업체 및 세관 설명회 개최(5월)
- ㅇ (업체) 고시개정, 평가항목 및 최소평가기준, 가점 신청 프로세스 등
- ㅇ (세관) 고시개정,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개편사항 등
- □ [시험 운영] 통합산식에 의한 법규준수도 점수 사전 공개(8월, 11월)

- o (1차 '25년 2분기) 7.20 → 현행 점수 공개, <u>8.10 → 통합시 점수 공개</u>
- o (2차 '25년 3분기) 10.20 → 현행 점수 공개, <u>11.10 → 통합시 점수 공개</u>
- □ [가점신청 테스트] Uni-pass를 통한 가점 신청 시범 운영(7월, 9월)
 - o (1차) 특정업체 대상으로 신청 안내·승인 → 오류·결함 확인 후 조치(7월)
 - o (2차) 모든 업체 대상으로 신청 안내·승인 → 제도시행 전 점검(9월)

2 사전 이행준비

□ 설명회 개최

ㅇ사전 교육, 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개최(가이드배포)

<1차 - 제도변경 설명회>

- (**직원 대상**) '25. 5. 19.(월)(온라인)
- (업체 대상) '25. 5. 19.(월)(온라인), 5. 20.(화)~5. 23.(금)(현장 방문)

일정	5.19.(월)	5.20.(화)	5.21.(수)	5.22.(목)	5.23.(금)
본부 세관	온라인 ▶ 세관, 업체	서울	부산	인천 공 항 인천항	평택

<2차 - 시험운영 설명회>

- (**직원 대상**) '25. 6. 19.(목)(온라인)
- (**업체 대상**) '25. 6. 19.(목)(온라인), 6. 24.(화)~6. 27.(금)(현장 방문)

일정	6.19.(목)	6.24.(화)	6.25.(수)	6.26.(목)	6.27.(금)
본부 세관	온라인 ▶ 세관, 업체	서울	부산	인천 공 항 인천항	평택

※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음

□ 의사소통 채널 구축

ㅇ 이행그룹별 오픈채팅방 개설 → 이행단계별 진행사항 및 조치하여야 할 사항 등 정보공유

참고

법규준수도 통합 이행 주요 일정

0171				2025년					2026년
일정 구분	4월 5월	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1월
	1 2 3 4 1 2 3	4 5 1 2 3 4 고시개정안 의뢰		1 2 3 4 시험운영 1차 공개	1 2 3 4 시험운영 2차 준비	1 2 3 4 5 시험운영 2차 준비	1 2 3 4 시험운영 2차 공개	l 1 2 3 4 법규준수도 제도 시행	1 2 3 4 5 법규준수도 정식 운영
주요 마일스톤		(6월 1주차)	(7.1~7.10)	(8.10)	(9.20~9.31)	(~10.20)	(11.10.)	(12.20.)	('26.1.25.)
I. 제도 (법규준수도 통합)	통합 및 이행 계획 보고 ① 워킹그룹 구 ② 제도변경 설	·성				고시 개정 확정(예?	*		
표. 시스템 (시험 운영)		시험운영 계획 수립 시험운영설 시범운영(1차) : + 가점신청 특송협	준비 기간			비기간	+ '25. 3분기		

법규준수도 통합개편 「법규준수도 평가제도」통합 및 이행계획

참고자료

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

참고자료

1. UNI-PASS를 통한 관세협력도 신청 가이드	21
2. 특송협력도 운영 설명자료	41
3. FAQ(변경되는 법규준수도 제도 관련 사항)	4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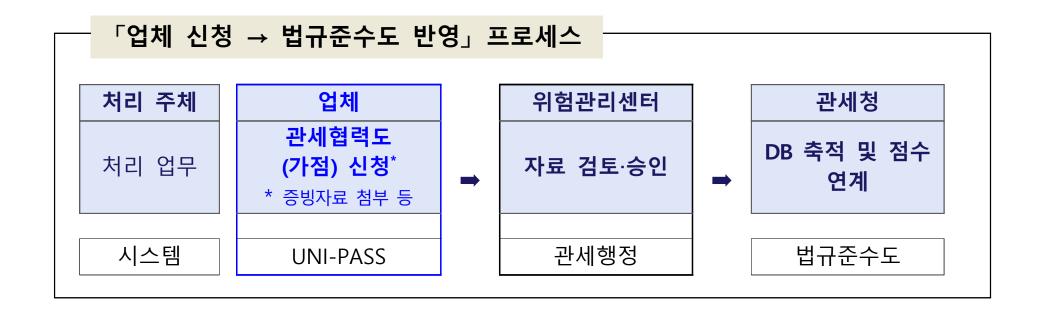
51

<참고> 법규준수도 제도 개요 / 문의처

UNI-PASS를 통한 관세협력도 신청 가이드

1 개요

- □ 관세협력도란?
- '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' 제5조 제3항에 따라 평가되는 「관세 행정에 대한 협력 등 실적」을 의미
 - ※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*에 따라 관세협력도의 세부평가사항은 상이함
 - * 수출입업체, 신고인, 보세구역운영인, 보세운송업자, 화물운송주선업자, 하역업자, 특송업체, 선박회사, 항공사,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등 10개 공급망
- □ 업체신청에 의한 관세협력도 평가
- o (**개요**) 수출입관련 이해당사자(이하 "업체")가 UNI-PASS를 통해서 관세협력도를 신청하면, 관세청에서 이를 확인하여 법규준수도에 반영하는 프로세스
 - → 모든 업체가 신청 가능하며, '가점' 항목에 해당함



- o (신청 항목) ① 표창, ②간담회·설명회, ③ 교육, ④경진대회
- (신청 기간) <u>매분기 마지막 달의 20일~말일</u>까지 UNI-PASS로 신청
 - 동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분기 법규준수도에 반영 불가하며, 이는 법규준수도 고시 제12조 제1항에 따른 **의견제출 대상이 아님**
 - ※ 동 기간외에는 UNI-PASS의 가점신청 메뉴가 활성화 되지 않음

2 평가항목별 인정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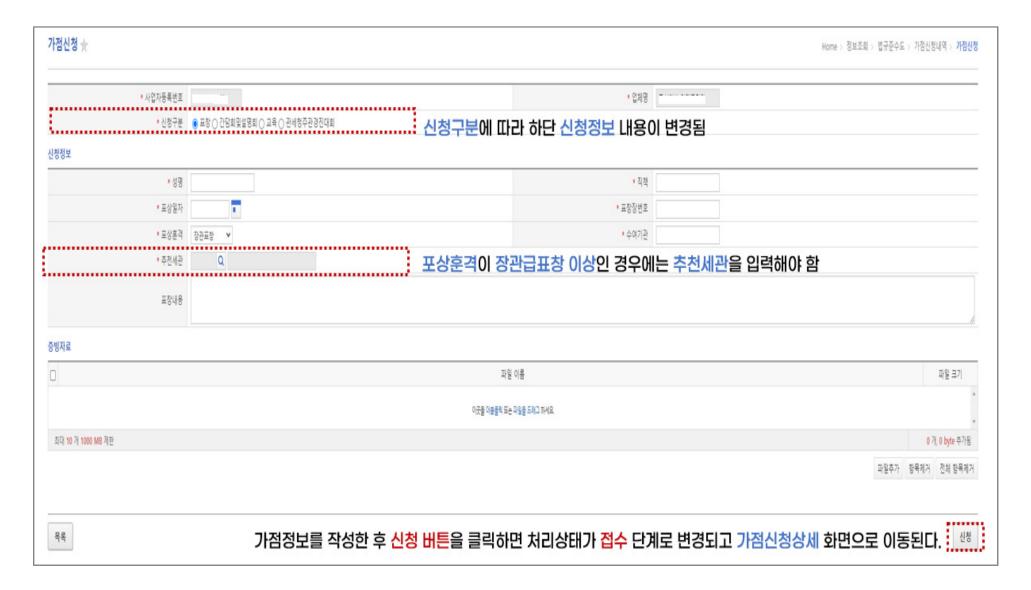
□ 공통

- o **파견직원** 실적 인정 기준
- 파견직원의 표창, 간담회·설명회, 교육, 경진대회 실적은 가점 신청업체의 실적으로 인정 단, 신청화면의 업체명과 증빙자료상의 소속이 불일치 하는 경우, **가점 신청업체 근무사실 증빙자료** 추가 제출
- ㅇ 증빙자료 등록 기준
- (파일 유형) JPG, GIF, PNG, BMP, JPEG, PDF 확장자 파일만 등록 가능
- (최대 용량) 10개 파일추가 가능, 최대 용량 1,000MB

1) 표창

구분	내용
입력사항	(필수) 성명, 직책, 포상일자, 표창장 번호, 포상훈격*, 수여기관, 추천세관** (선택) 표창내용 * 훈격: 산업훈장(금탑,은탑,동탑,철탑,석탑), 산업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장관표창, 관세청장표창, 세관장표창 ** 장관급 이상인 경우 추천세관 필수 입력 ※ '사업자등록번호, 업체명'은 유니패스 로그인 인증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업체명으로 자동입력됨(이하 동일)
증빙자료	(필수) 표창장
인정기준	(대상) 청장·장관급이상 표창, 세관장 표창 (평가기준)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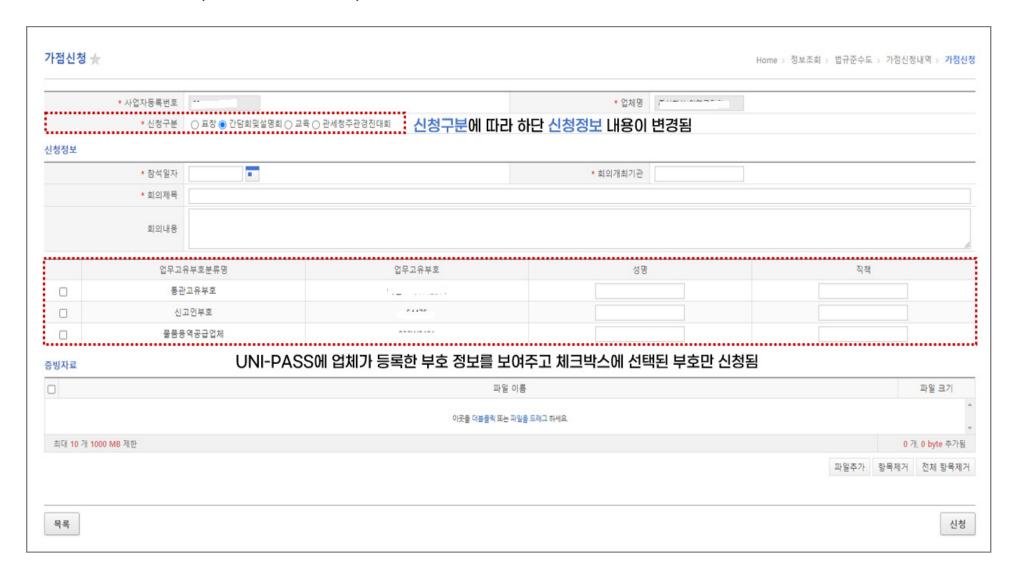
< 가점신청화면(표창) >



2) 간담회·설명회

구분	내용
입력사항	(필수) 참석일자, 회의개최기관, 회의제목, 업무고유부호별 성명·직책 (선택) 회의내용 ※ ①간담회·설명회별로 입력(여러개의 간담회 등을 한건의 신청번호로 입력 금지) ②간담회 등 참석업체가 여러 공급망에 해당*하는 경우 한 개의 공급망 해당고유부호만 선택**하여 입력
	* 예) A업체 → 수출입업체이면서 보세구역운영인에 해당 ** 간담회 등이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 필요 ③간담회 등 참석업체가 한 개의 공급망에 여러개의 고유부호를 가지고 있는 경우 → 참석자에 따라 해당 고유부호 복수 선택하여 입력 가능* * 예) A보세구역에서 a창고 고유부호 1명, b창고 고유부호 1명, c창고 고유부호 1명이 동일 간담회 참석시, 각각 고유부호별로 등록 가능 → a,b,c 고유부호별로 법규준수도 점수 산정시 각각 간담회 참석 1회로 인정 ④고유부호별 참석자는 대표로 1인만 입력
증빙자료	(필수) 공문, 서명부 등 ※ 설명회 특성상 공문, 서명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, 사진이나 세관확인 등 예외적인 증빙 인정
인정기준	(대상) 관세청·세관 주관 간담회, 설명회 참석 (범위)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*이 있는 경우 * 예) 화물운송주선업: 인천공항세관 포워더 대상 설명회, 보세구역: 2024 보세사 간담회 (적용시점) 간담회·설명회 개최일이 속하는 분기 법규준수도에 반영 (평가기준) ①고유부호 기준 법규준수도: 참여 인원수에 관계없이 간담회·설명회별 1건(신청번호 기준)만 인정 ②사업자번호 기준 법규준수도: 고유부호수, 참여 인원수에 관계없이 간담회·설명회별 1건(신청번호 기준)만 인정 1건(신청번호 기준)만 인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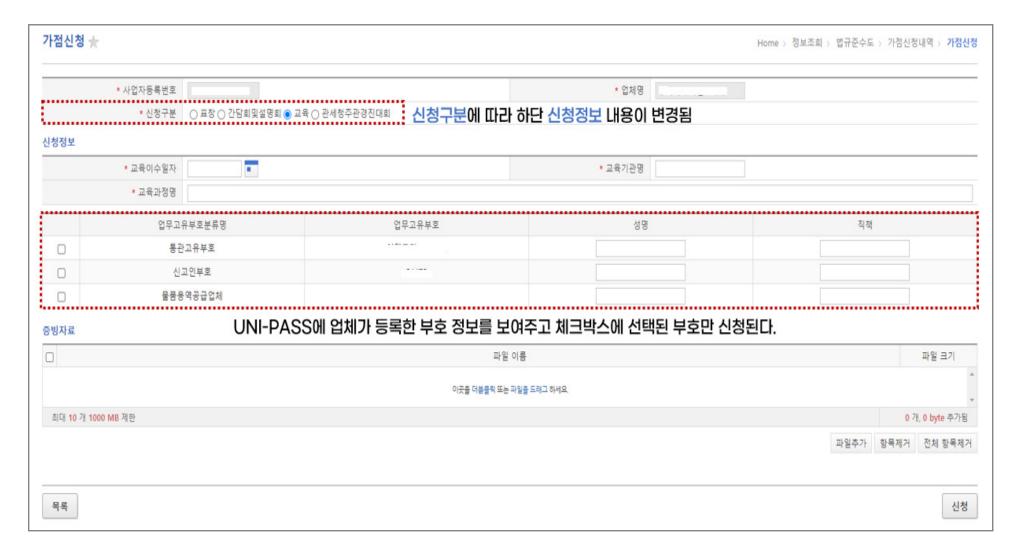
< 가점신청화면(간담회·설명회) >



3) 교육

구분	내용
입력사항	(필수) 교육이수일자, 교육기관명, 교육과정명, 업무고유부호별 성명·직책 ※ 교육수료자별로 1건만 입력(신청번호 1건 = 교육수료자 1명)
증빙자료	(필수) 교육수료증
인정기준	(대상) 관세청 주관 교육 또는 유관기관(협회)* 주관교육 이수 * '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'에 따라 설립허가된 비영리법인 → 한국관세사회, (사)한국관세물류협회, (사)한국관세무역개발원 등 ※ (사)한국AEO진흥협회의 수출입책임관리자교육, 총괄책임자교육이수는 불인정(AM협력도 평가항목과 중복) (범위) 해당 공급망의 업무와 관련성*이 있는 경우 * 예) 신고인: 오류방지교육, 보세운송업체: 보세운송업체 임직원 직무능력 향상교육 (적용시점) 교육수료일이 속하는 분기 법규준수도에 반영 (평가기준) 신청 인원별 점수부여(예: A교육 참석자가 동일 업체에 3명일 경우 → 3건 교육으로 인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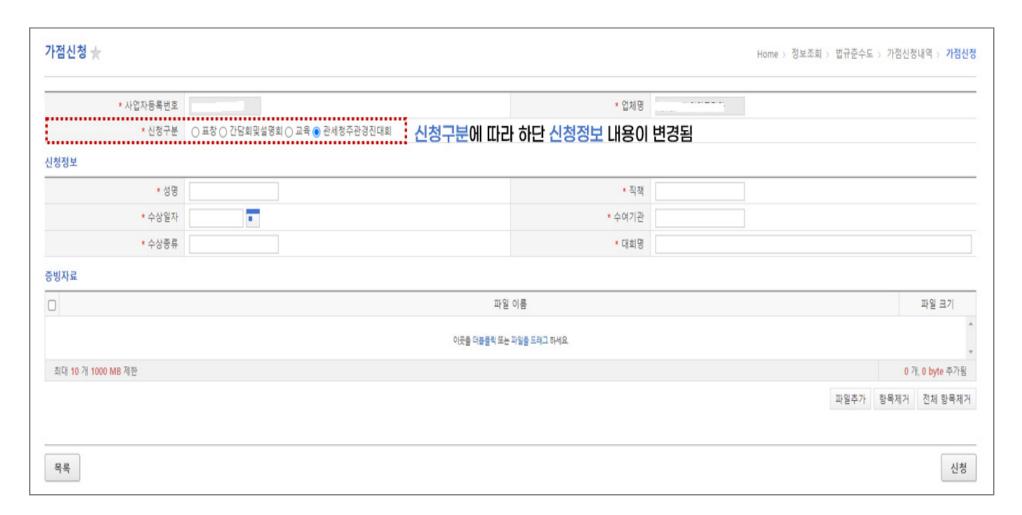
< 가점신청화면(교육) >



4) 경진대회

구분	내용									
입력사항	(필수) 성명, 직책, 수상일자, 수여기관, 수상종류, 대회명									
증빙자료	(필수) 경진대회 상장									
인정기준	(대상) 관세청·세관 주관 모든 경진대회 ※ AEO활용사례 나눔대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(관세청에서 등록) (적용시점) 수상일자가 속하는 분기 법규준수도에 반영 (평가기준)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평가									

< 가점신청화면(경진대회) >



신청건 처리 프로세스



- ㅇ 업체의 신청정보는 4가지 유형으로 처리됨
- ① 신청내용으로 승인 ② 관세청에서 수정후 승인 ③ 관세청에서 보완요청후 승인 ④ 반려

- □ 가점신청 절차
 - UNI-PASS 메뉴경로: HOME > 정보조회 > 법규준수도 > 가점신청내역
 - 1. 가점신청 → 접수 → **승인**



가점정보를 작성한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상태가 접수 단계로 변경되고 가점신청상세 화면으로 이동된다. 가점신청 🛬 Home > 정보조회 > 법규준수도 > 가점신청내역 > 가점신청 * 사업자등록번호 * 업체명 * 신청구분 ○ 표장 ⑥ 간담희및설명회 ○ 교육 ○ 관세청주관경진대회 신청정보 회의개최기관 관세정 * 참석일자 2024-09-06 * 회의제목 20240906 가정신청 테스트 * 회의내용 업무고유부호분류명 업무고유부호 직책 성명 통관고유부호 **~** 김철수 팀장 신고인부호 물품용역공급업체 파일 이름 파일 크기 . 🖂 🚾 간담희밎설명희 증빙자료.png 1 개, 322.66 KB 추가됨 파일추가 항목제거 전체 항목제거 목록 신청 업무고유부호: UNI-PASS에 업체가 등록한 부호 정보를 보여주고 체크박스에 선택된 부호만 신청된다. 증빙자료: JPG, GIF, PNG, BMP, JPEG, PDF 확장자 파일만 등록 가능하다.



2. (가점신청 → 접수) → **수정후 승인**

관세청에서 가점신청 정보를 수정후 승인하면 처리상태가 승인으로 변경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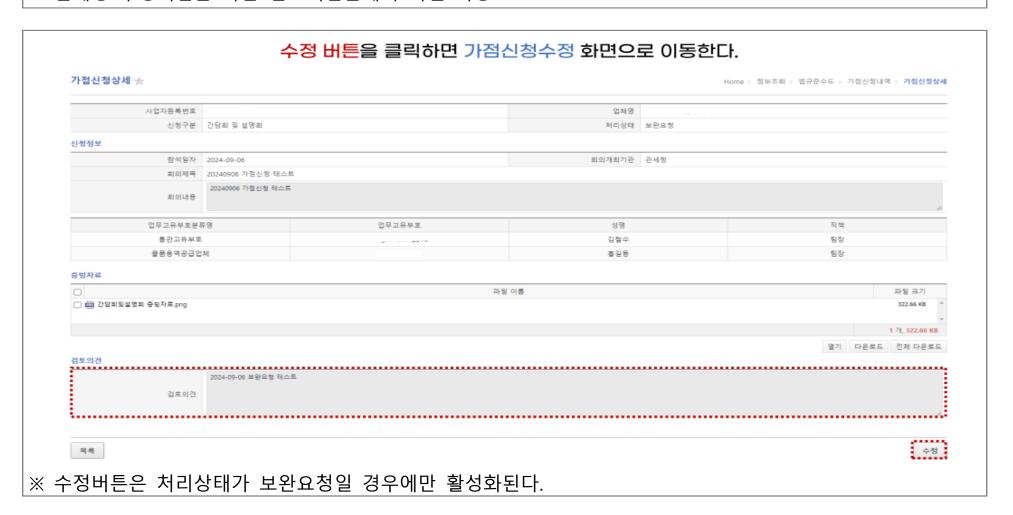
※ 관세청 수정의견은 하단 검토의견란에서 확인 가능



3. (가점신청 → 접수) → **보완요청** → 재신청

관세청에서 보완요청을 하면 처리상태가 보완요청 단계로 변경된다.

※ 관세청 수정의견은 하단 검토의견란에서 확인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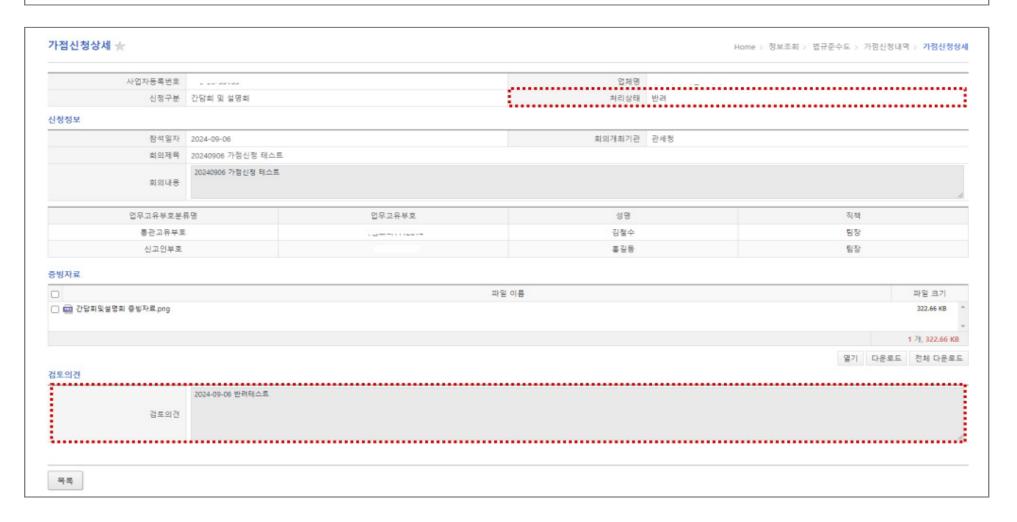
가점정보를 수정한 후 재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처리상태가 접수 단계로 변경되고 가점신청상세 화면으로 이동된다. 가점신청 🛬 Home > 정보조회 > 법규준수도 > 가점신청내역 > 가점신청 * 사업자등록변호 * 업체명 * 신청구분 ○ 표장 ⑥ 간담희및설명희 ○ 교육 ○ 관세청주관경진대회 * 참석일자 2024-09-06 ★회의개최기관 관세청 * 회의제목 20240906 가정신청 테스트 20240906 가점신청 테스트 * 회의내용 업무고유부호분류명 업무고유부호 성명 통관고유부호 김철수 팀장 **~** 신고인부호 홍길동 팀장 물품용먹공급업체 증빙자료 파일 이름 파일 크기 □ 🖾 간담회및설명회 증빙자료.png 322.66 KB 최대 10 개 1000 MB 제한 1 개, 322.66 KB 추가됨 파일추가 항목제거 전체 항목제거 검토의견 2024-09-06 보완요청 테스트 검토의견 취소 재신청

접수 이후 프로세스는 이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. 가점신청상세 🚖 Home > 정보조회 > 법규준수도 > 가점신청내역 > 가점신청상세 사업자등록변호 신청구분 간담회 및 설명회 처리상태 접수 신청정보 참석일자 2024-09-06 회의개최기관 관세정 회의제목 20240906 가점신청 테스트 20240906 가점신청 테스트 회의내용 업무고유부호분류명 업무고유부호 성명 직책 통관고유부호 김철수 팀장 신고인부호 홍길동 팀장 증빙자료 파일 이름 파일 크기 🗌 🧰 간답희및설명희 증빙자료.png 322.66 KB 1 개, 322.66 KB 열기 다운로드 전체 다운로드 검토의견 2024-09-06 보완요청 테스트 검토의견 목록

4. (가점신청 → 접수) → **반려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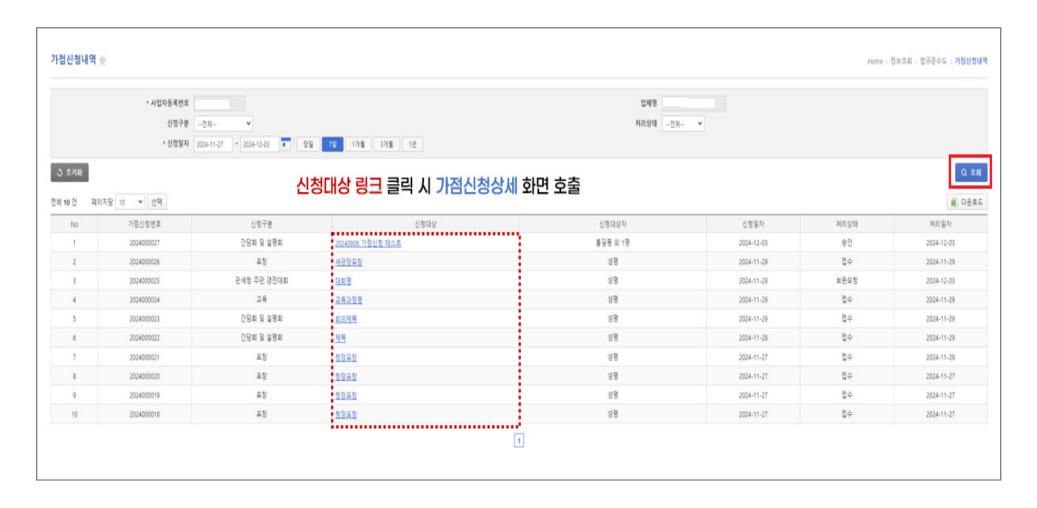
관세청에서 반려하면 처리상태가 반려로 변경된다.

※ 관세청 반려의견은 하단 검토의견란에서 확인 가능



□ 가점신청내역 조회

- UNI-PASS 메뉴경로: HOME > 정보조회 > 법규준수도 > 가점신청내역



2 특송협력도 운영 설명자료

1 개요

- □ 특송협력도란?
- 「**관세협력도**」중 특송업체의 협력도 평가를 위한 항목으로 평가는 각 세관에서 수행
- 「특송업체 법규준수도 평가·관리 업무 처리지침」을 개정*하여 현행 지침의 전산확인 항목을 제외한 **서면 확인사항(표창 제외)을 '특송협력도'로 운영 예정**('25.12.)
 - * 제도 통합으로 신고정확도 등 정량 평가항목은 통합고시로 이관, 특송협력도만 특송지침으로 운영
 - → 평가일정, 배점은 변경. 서류제출 방법·항목과 법규준수도 활용방안은 현행과 동일.

협력도 평가 프로세스

 (관세협력도^{가점})
 업체가 UNI-PASS로 협력도 신청(증빙첨부) → 위험관리센터 평가

 (특송협력도^{감·가점})
 업체가 서면(메일 등)
 제출 → 세관 특송담당자가 평가 → 결과등록*

 * 전자통관-법규준수도-통합법규준수도 관리-특송협력도 평가등록(신설)

※ 특송 지침의 평가대상 (특송업체 법규준수도 → <u>특송협력도</u>)

현 행	평가항목	평가방식	<u>개 정</u>
□ 신고정확도 (7개)	목록통관 보류율 외 6		
	업체선별에 의한 적발률	전산확인	
□ 검사선별 성실도 등 세관 협력도 (3개)	업체선별에 의한 불법물품 적발		
	① 불법행위 정보제공		
□ 의무사항 이행도 (2개)	② 불법물품 밀반입 방지 교육	서면확인	
	③ 통관목록 선별자 관리	NESE	
□ 가점요소 (2개)	④ 세관 업무 협력도		특송협력도
	표창, 포상*	서면확인	
□ 감점요소 (2개)	법령위반 및 행정제재	전산확인	
	⑤ 세관장 협조사항 불이행	서면확인	

^{*} 표창, 포상은 「통합 법규준수도 평가와 운영에 관한 고시」 절차에 따름

│ 평가일정 → 단축

□「관세협력도」신청·평가 일정*등 고려하여 현행 **평가일정 조정**

* 업체는 매분기 마지막달 말일까지 신청 - 법규준수도 평가결과 제공 (매분기 다음달 25일 Uni-Pass 공개)

현행

- o <u>평가하는 달의 5일</u>까지 업체로부터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달의 <u>10일</u>까지 업체에 평가 결과 통보
- o 평가결과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평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<u>10일 내</u>에 세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세관장은 의견 제출일로부터 10일 내에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업체에 통보

개정(안)

- o <u>매 분기 마지막달 말일</u>까지 업체로부터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달의 <u>10일</u>까지 업체에 평가 결과 통보
- o 평가결과에 의견이 있는 업체는 평가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<u>5일 내</u>에 세관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, 세관장은 의견 제출일로부터 5일 내에 제출받은 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업체에 통보

(3분기 예시)	(업체)서류제출	(세관)평가결과통보	(업체)의견제출 [*]	(세관)결과통보
현행	~ 10.5	~10.10	~10.20	~10.30
개정(안)	~ 9.30	~10.10	~10.15	~10.20

^{*} 특송협력도 의견제출 수렴은 위 기간에 완료되며, UNI-PASS 법규준수도 공개 후 의견제출 대상 아님.

※ 특송협력도 평가일정 비교

	現 특송지침	개정(안)
구 분	평가시행	특송협력도 평가시행
1분기(1월~3월)	4월	~4.20
2분기(4월~6월)	7월	~7.20
3분기(7월~9월)	10월	~10.20
4분기(10월~12월)	익년 1월	~익년1.20

	통합고시						
	법규준수도 평가결과제공 [*]	평가결과 적용					
	4월25일	5월부터 7월					
전산 배치 (5일)	7월25일	8월부터 10월					
	10월25일	11월부터 익년 1월					
	익년1월25일	2월부터 4월					

◆ 매분기 다음달 25일 Uni-Pass공개 전 전산배치 5일 소요 감안, 세관담당자는 20일까지 특송협력도 결과 전산등록 필요

◆ 평가결과제공일 법규준수도를 다음달부터 적용(ex검사율 차등) → 법규준수도 의견제출 절차에 따른 최종점수변경으로 검사율 적용 등급 변경시 향후 반영 (잠정)

3

평가항목 · 배점 → 항목은 동일, 배점 축소

□ 가점(4개) 항목과 감점(1개) 항목으로 구성

구분	내용	배점변경
1) 불법물품 밀반입 방지 자체교육	o 교육자료, 교육사진, 참여자 명단 제출시만 인정(월 1회 이상) * 교육내용(특송고시 제21조에 따른 마약/총기류/국민건강위해 물품 등 불법 물품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) □ 3회 이상(1) □2회 실시(0.5) □1회 실시(0.3) □ 미실시(0)	5 → 1
2) 통관목록 선별자 관리	○ 특송고시 제21조에 따른 근무명령서 제출 및 근무실태 관리 여부 확인 * 통관목록 전산 제출시 선별직원란 성실 기재 여부 확인 * 근무실태 자체점검(분기별 1회이상) □ 제출 및 점검(1) □제출(0.5) □점검(0.5) □미실시(0)	5 → 1
3) 불법행위 정보제공	 ○ 불법행위 정보 제공건 (특송고시 제19조 제3항 1호, 3호) ○ 물품수집단계에서 불법물품(마약, 총기류, 국민건강위해물품)임을 인지하여 취급 ・운송하지 않은 건(특송고시 제19조 제4항) * 불법행위(물품)에 대한 구체적 증빙자료를 갖추고, 자체 정보분석 후 업체 내부 결재를 받아 공문으로 세관에 제출하여 인정된 건에 한함 □ 건당 (1점) 	\rightarrow
4) 세관장	ㅇ 세관장 협조사항 불이행 여부 확인	최대 10점 감점
협조사항 불이행	* 특송업체 의무사항 위반, 특이사항 발생 시 미보고 또는 지연보고, 협조사항에 지연 또는 비협조 등 □ 건당 (-1점)	→ 최대 5점 감점
5) 기타 협력도	o 세관의 업무협조 요청에 자진하여 협조한 사실이 증빙자료(요청받은 내역, 협조한 내역) 제출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 □ 건당 (0.1점)	10 → 3

3 │ 자주 묻는 질문(FAQ)

1 여러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?

- □ (배경) 하나의 업체가 여러 평가제도에 의해 중복 평가, 민원인 혼란 → 평가체계 통일
- □ (효과) 업체 자율 법규준수도 제고 및 불필요한 행정 비용 제거

2 여러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어떤 방식으로 통합하나요?

- □ (단일) 법규준수도 평가체계로 통합하되, 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및 법규능력수행평가제도의 장점 반영
- □ (**방식**) 정량평가 적용(정성평가X), (**체계**) 신고정확도 중요사항위반 + 관세협력도^{특송포함}

< 현행 법규준수 평가제도 비교표 >

구	분	통합 법규준수도(2010~)	특송업체 법규준수도(2009~)	법규수행능력평가(2005~)
관리	비부서	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	청 전자상거래통관과	청 통관물류정책과
평기	평가대상 10개 공급망*		특송업체	비AEO 물류업체(보세구역 등 6개)
	루적	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법규준수도 향상	특송업체 검사비율 차등관리	물류업체 관리
평가	정량	^① 신고정확도 - ^② 중요사항위반 + ^③ 관세 협력도	^① 신고정확도 - ^② 감점 + ^③ 세관 협력도· 가점 + 의무사항이행도	^{①②} 법규준수 + ^③ 관세협력도
체계	정성			+ 경영안전, 시설장비, 내부통제
측정	성방식	정량화된 기준으로 분기별 측정	정량평가 중심으로 분기별 측정	현장확인 등 정성평가 중심으로 연간 측정
1	탈용	AEO 공인, 담보면제 등	검사율 차등 적용 등	보세구역 특허, 갱신 등

* 10개 공급망 : ①수출입업체 ②신고인 ③특송업체 ④보세구역운영인 ⑤보세운송업자 ⑥회물운송주선업자 ⑦선박회사 ⑧항공사 ⑨자유무역자역 입주기업체 ⑩하역업자

3 법규준수도가 통합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?

- □ (업체 측면)
 - (공통) 법규준수도에 대한 의견 제출은 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 신청(유니패스)
 - (**법규수행능력평가 대상업체**) 자율점검표 작성 의무 소멸(단, 가점은 유니패스 신청)
 - (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대상업체) 특송협력도 평가절차 수행(증빙서류 제출)
- □ (세관 측면)
 - (AEO 담당자) 표창 등 관세협력도 가점은 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에 신청 안내
 - (**법규수행능력평가 담당자**) 법규수행능력평가 관련 심사 및 평가결과 통보절차 소멸
 - (**특송업체 법규준수도 담당자**) 특송협력도 평가절차 수행

4 새로운 평가체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
- □ (기본 방향) 2025년 하반기 제도 시행 목표('25. 12. 20.)
- ※ (**특송업체 법규준수도**) 2025년 3분기까지만 평가, (**법규수행능력평가**) '25~'26년까지 평가(특허 갱신 등 활용 고려, '25년 및 '26년에 받은 등급의 효력만료시점은 미정)

5 평가 대상 및 적용 범위 등은 어떻게 조정되나요?

- □ (**평가 대상**) 10개 공급망(수출입업체, 신고인, 물류업체)
- □ (적용 범위) 평가단위별(법인, 사업자, 고유부호) 평가
- ※ 단, 공급망별 최소 평가기준* 충족 시 법규준수도 측정 가능

< * 평가대상 최소 기준 변화 >

구분	통합 전	통합 후
수출입업체	수출입신고 1건 이상	수출입신고 10건 이상
관세사	관세사 기준 개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, 연간 신고 1,000건 이상	좌동
특송업체	HBL 1건 이상	목록통관 실적 500건 이상
물류업체	해당 [*] 신고건 1건 이상 * 예) 보세구역·FTZ→반출입건수, 보세운송업자→보세운송	좌동 신고건수, 선사·항공사→MBL건수, 포워더→HBL건수

- □ (측정기간 및 평가 주기) 최근 2년 / 매분기(1월, 4월, 7월, 10월 점수공개)
- □ (**정보 제공**) 평가기준 일부 공개 전환(평가항목(항목별 정의서 포함) 등)

6 표창, 설명회 등 관세협력도 가점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와 신청 방식은?

- □ (신청 시기) 매분기 마지막 달의 20일~말일까지 최근 2년간의 자료 제출
- □ (**신청 방식**) 유니패스를 통하여 관련 증빙자료 제출(관세협력도 설명자료 참고)

7 특송협력도란 무엇이며 관세협력도와 다른 것인가요?

□ (**정의**) 특송협력도는 특송업체의 입증자료 제출 등을 통해 세관에서 확인되는 특송 업체의 관세협력도 점수로, 관세협력도의 범주에 속함(특송협력도 설명자료 참고)

8 업체의 법규준수도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?

- □ (**업체**) 전자통관시스템(유니패스) > 정보조회 > 법규준수도
- □ (**세관**) 전자통관시스템(유니패스) > 법규준수도

9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제출(이의제기)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?

□ 점수제공일(매 분기 다음 달 25일)의 다음 달 10일까지 전자통관시스템(유니패스)을 통하여 제출

< 의견제출 및 검토 절차 >

 UO 법규준수도 공개 \rightarrow OO 의견제출 \rightarrow UO 검토결과 통지 * \rightarrow UO 법규준수도 정정 **

* 점수 제공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/ ** 매분기 말일까지

(3분기 예시)	^{센터} 법규준수도 공개	^{업체} 의견제출	^{센터} 검토결과 통지	^{센터} 법규준수도 정정
(3단기 에시)	10.25	~11.10	~11.30	~12.31

※ (특송업체) 특송협력도 평가에 관한 의견제출은 ^{센터}법규준수도 공개 전 특송협력도 평가기간 내에 완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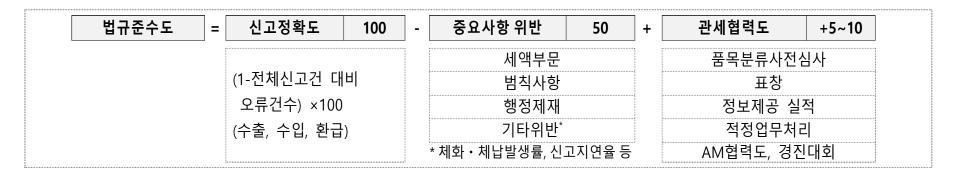
10	현자	는	특송	업체	의	경우	, 세관	··에서	업	체별	평기	가 결.	라에	따	라 경	검사비	율	차등	<u></u> 라리오
10	자체	시설	통	관 저	한	및 _	1 밖어	∥ 필요	한	조치	를 ㅎ	하고	있는	데	향후	어떻	게	달라지	나요?
	제도	통힙	에	따른	변등	동 없	이 특	송업치	테 빝	법규준	수도	- 평	가결	과	활용	방안유	<u> </u>	현행과	동일
11	현자	는 !	특허	갱신	<u>!</u> 시	법구	구수행	능력핑	ਰ 카	를 활	용하	고 (있는	킈, 현	향후	어떻	게	달라지	나요?
	(방안) 법·	규준	수도	일	정 젇	j수 0	상 추	두	시	특허	갱신	<u>년</u> 가	능ㅎ	하도를	록 조기	t (계정	
	(계획) 특	허 경	갱신	가능	5 점=	수 여	부 및	시	행시기	기는	미정	<u> </u>	로 추	후	안내	예	정	
12	업처	에스	l 법	규준	수도	를 ;	높이라	1고 ㅎ	누	데 어	떻게	할	수	있ㄴ	¦요 ?				
	(협력	강호	화) 근	관세햩	협력.	도 기	h점 신	<u>l</u> 청											
*	교육,	간담	회(설	설명회) 적	극 참	여 및	업체	신청	성에 으]한 :	가점	반영	프로	르세스	활용			
	(자율	관리	네) 공	공개돈	<u>.</u> 평	가항	목과	오류	상서	∥내역	을	확인	하여	자-	율적	법규	준수	누 제고	. 노력
13	평가	체기	계 년	년경 으	로	인해	업체	와 세	관0	ᅦ서는	- 어	떤 4	준비-	를	하여	야 하	나요	2?	
П	/시헌	유영	찬(여) 시	니행	전 I	번규쥬		비.		히	기능	제글	로 및	リフト	점신경	 보던	 ヘ E	예정

※ 전·후 법규준수도 변동 폭 사전 점검, 운영 일정 확인(가이드 별도 안내 예정)

참고 법규준수도 제도 개요 / 문의처

- 공급망별 법규준수도를 분기별로 측정하여 AEO 공인 등 관세행정에 활용
- □ (**측정근거**) **관세법 제255조의7 제1항**에 따라 수출입과 관련된 자를 대상으로 법규준수 정도를 측정·평가
 - 『통합 법규준수도 평가 및 운영에 관한 고시』에 평가대상·절차·항목 등을 규정하고, 세부 평가기준 및 점수산식은 비공개 운영
- □ (측정기간/주기) 최근 2년 / 매분기(1월, 4월, 7월, 10월 점수공개)
 - * 매 분기별 최근 2년간 데이터를 기초로 전자통관시스템 내 법규준수도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
- □ (**측정대상**) 수출입업체, 신고인, 보세구역, 보세운송, 선사, 항공사, 특송업체, 화물운송주선 업체,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, 하역업자(**10개 분야**)
- □ (**평가방식**) 우리청 전산망에서 측정가능한 **정량적 요소**를 기반으로 단순 오류와 중요 위반을 차감하며, **관세행정 협력 가점** 반영

〈 법규준수도 점수 산정방식 〉



- □ (**법규준수도 활용**) AEO, 담보면제, 통고처분, 특허심사 등 활용
 - (AEO) 법규준수도 80점 이상이면 AEO 공인기준을 충족하고 점수에 따라 등급 결정
 (A등급 80점↑, AA등급 90점↑, AAA등급 95점↑)
 - (담보제공 생략)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 시 법규 준수도가 80점 이상인 자는 담보생략 가능
 - (**통고처분**) 법규준수도 80점 이상 중소기업은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경
 - (특허심사)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포함(총 1,000점 중 60점)

■ 법규준수도 통합관련 문의처

- □ (문의사항 총괄)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
- o 대표메일 : <u>law1@korea.kr</u>
- o 대표전화 : 🕿 042) 481- 1124
 - ※ 동시에 다수의 문의전화가 있을 수 있으니 대표메일로 우선 문의 바랍니다.
- □ (의사소통 채널) 오픈채팅방 임시 운영(정식 운영시 까지)
 - o 대상 : 법규준수도 이용 세관직원 및 업체담당자
 - o 목적 : 시험운영 진행 실시간 정보 공유 및 소통